

날 짜 : 2025.03.12.(수)  
수 신 : 교육·노동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원주현  
(010-2054-8112)



위원장 원주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12층  
<https://kust.kftu.net/> 대표전화 010-2054-8112  
E-mail: nsstu1111@naver.com

[보도자료] 현장체험학습 대응마련 현장 교사 설문 실시

**현장체험학습 안전 우려 확산...교사 75% “전면폐지” 요구**  
**교사노조연맹-전국중등교사노조 중·고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사 35% “안전사고 법적 분쟁 우려”, 19% “악성 민원 부담”**  
**교육 당국, 안전 보완책 마련 시급**

1. 25년 2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3일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 위원장 원주현)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전체 설문결과 중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총 992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서의 교사의 의견 반영 여부 ▲ 학교안전법 개정안으로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 보안 기대 여부 ▲ 현장체험학습의 인솔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 ▲2025년도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의 대안이 좋은가 ▲실시할 경우 보완책은 무엇인가 의 총 7문항에 답하였다.
3.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에 관해서는 21명(2%)이 “미실시”, 191명(19%)이 “연1회 운영 및 학운위 심의 통과(6월21일 이후)”, 346명(35%)이 “연1회 운영 및 학운위 심의 통과(6월21일 이전)”, 300명(30%)이 “연2회 운영, 학운위 심의 통과”, 134명(14%)이 “학운위 심의 전 협의 중”이라 응답했다.
4. 현장체험학습 추진과정에서의 교사의 의견 반영 여부에 관해서는 64명(6%)이 “그렇다”, 236명(24%)이 “그렇지 않다”, 11명(1%)이 “매우 그렇다”, 155명(16%)이 “보통이다”, 526명(53%)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즉, 77%의 교사가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5. 6월21일자로 시행되는 학교안전법개정안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어려움이 보완된다고 생각하느냐에 관해서는 43명(5%)이 “그렇다”, 265명(27%)이 “그렇지 않다”, 11명(1%)이 “매우 그렇다”, 140명(14%)이 “보통이다”, 525명(53%)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즉, 80% 이상이 법 개정 후에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6. 현장체험학습시 인솔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는 총 2774개의 응답 중 508개(19%)가 “악성민원에 대한 부담”, 977개(35%)가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우려”를 답해 과반수의 응답이 인솔교사의 책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98개(25%)가 “학교폭력 및 교우관계 문제 발생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 591개(21%)가 “현장체험학습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업무”를 꼽았다. 즉, 교사들은 법적 분쟁과 민원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7. 2025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748명(75%)이 “현장체험학습 전면폐지”에 응답했으며, 148명(15%)이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 실시예정,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보강 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89명(9%)이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 실시예정,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시행 이후 현장체험학습 실시”라 응답했다. 그 외 7명(1%)는 기타 의견(가정에서 갈 수있도록 지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이미 계획된 체험학습은 시행하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등)을 보였다.

8.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관해서는 445명(45%)이 “현장체험학습을 교육과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29명(33%)이 “학교방문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184명(19%)이 “교육청(또는 정부) 주도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24명(2%)이 현재와 같이 “학교주도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10명(1%)이 “가정 주도 현장체험학습 또는 기타의견(체험 바우처지급 등)”의 의견을 보였다.

9.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에 관해서는 769명(36%)이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재판 시 법률적 지원”, 639명(30%)이 “안전 지원 인력 보강(30%)”, 538명(26%)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자로 관리자 의무 지정 및 동행”, 154명(7%)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예방교육 가이드 및 매뉴얼 보급(교육부 및 교육청)“, 16명(1%)이 “미실시 또는 기타의견(교육청 바우처 지급 등)“의 의견을 보였다.

10. 현장체험학습 실시와 관련하여 제언 및 바라는 점에 대한 자유 서술 응답에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교육청이 지원하는 체험학습 예산도 폐지하고, 각 가정에 여행 바우처를 지급해 개별적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부 교사들은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숙박형 체험학습만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험학습 운영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1. 중등교사노조 황지혜 사무처장은 “현재의 체험학습 운영 방식으로는 교사들이 직을 걸고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6월 21일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교사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험학습 운영 여부는 반드시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 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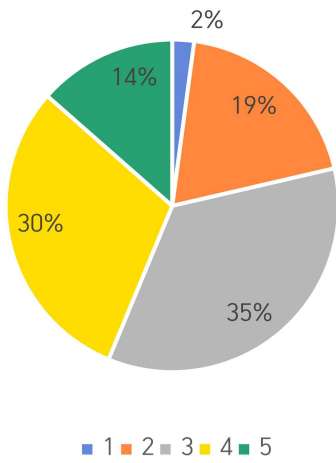
전 국 중 등 교 사 노 동 조 합

## 현장체험학습 대응 마련 설문조사 (2025)

###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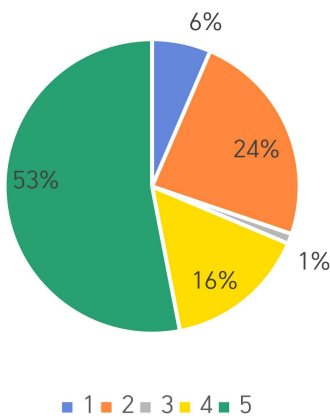
- 목 적 : 현장체험학습 대응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기 간 : 2025.02.26.~ 02.28.(3일간)
- 방 법 : 온라인 설문조사(모바일 병행)
- 설문대상 :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992명

현재실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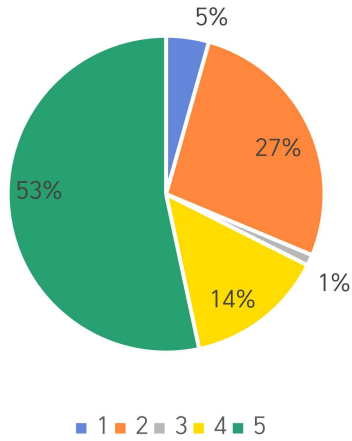
1. 미실시
2. 연1회,학운위심의통과(6.21이후)
3. 연1회,학운위심의통과(6.22이전)
4. 연2회,학운위심의통과
5. 학운위 심의전 협의중

현재추진과정에서의 교사의견 반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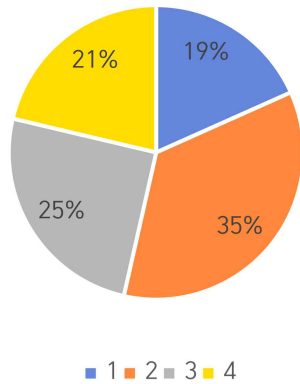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 매우그렇다
4. 보통이다
5. 전혀그렇지않다

6월21일자로 시행되는 학교안전법개정안으로 현장 체험학습의 어려움이 보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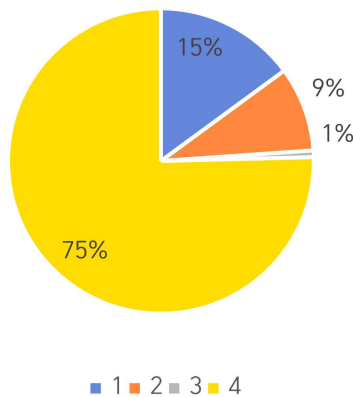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3. 매우그렇다
4. 보통이다
5. 전혀그렇지않다

현장체험학습시 인솔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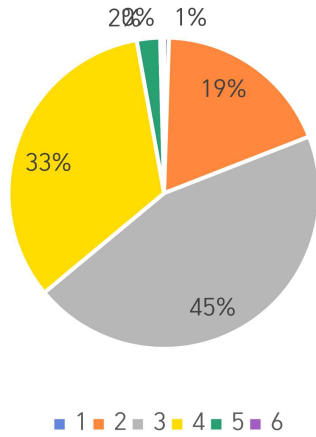
1. 악성민원에 대한 부담
2.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우려
3. 학교폭력 및 교우관계 문제 발생에 대한 지도의 어려움
4. 현장체험학습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업무

선생님은 2025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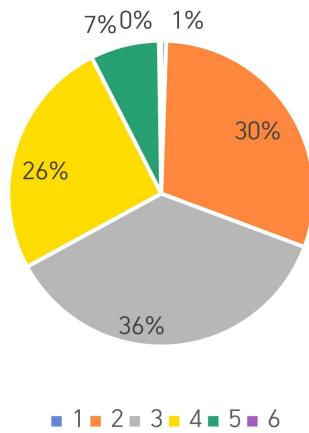
1.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실시 예정,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보강 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2. 개정된 학교안전법(2025.6.21. 실시 예정,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완화) 시행 이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3. 기타(현재처럼 실시,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게, 이미 정해진곳은 시행하되 법적책임 없게)
4. 현장체험학습 전면 폐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정주도 체험학습
2. 교육청(또는 교육부)주도 체험학습
3. 체험학습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제외
4. 학교방문형 체험학습
5. 학교주도(현재와 같이) 체험학습
6. 기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미 실시
2. 안전 지원 인력 보강
3.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재판 시 법률적 지원
4. 현장체험학습 안전책임자로 관리자 의무지정 및 동행
5. 현장체험학습 안전 예방교육 가이드 및 매뉴얼 보급(교육부 및 교육청)
6. 기타(교육청바우처를 가정에 제공 등)